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과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조정하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탁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나.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변경(안 제15조)

라.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등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안 제18조)

바. 당해연도 연가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연도의 연가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미리 사용가능 조항 신설(안 제19조)

사.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조정함(안 제23조)

3. 내　　용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입법예고 결과 : 2005.11.11~12.1(20일간), 의견 없음

다. 기타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 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제19조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중 "60일" 을 "연 60일" 로 하고, 동조제2항중 "180일" 을 "연 180일" 로 한다.

제2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일
출산	배우자	3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명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명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명 띄어 쓰기로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함
〈신설〉	제3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를 위한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명시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내에서 달리 운영가능토록 함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공휴일 등 근무) ①----------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시간외근무와 공휴일·토요일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변경하고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은 휴무일에 포함하여 근무명령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 ----------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등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일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삭 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명시(제13조)에 따라 삭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개정이유</th></tr>
<tr><td>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재 직 기 간</th><th>연가일수</th></tr><tr><td>3월이상 6월미만</td><td>4일</td></tr><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tr><td>1년이상 2년미만</td><td>10일</td></tr><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3일</td></tr><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6일</td></tr><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9일</td></tr><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2일</td></tr><tr><td>6년이상</td><td>23일</td></tr></table></td><td>제18조(연가일수) ①----------

-------.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tr><td>----------</td><td>3일</td></tr><tr><td>----------</td><td>6일</td></tr><tr><td>----------</td><td>9일</td></tr><tr><td>----------</td><td>12일</td></tr><tr><td>----------</td><td>14일</td></tr><tr><td>----------</td><td>17일</td></tr><tr><td>----------</td><td>20일</td></tr><tr><td>-------</td><td>21일</td></tr></table></td><td>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td></tr>
<tr><td>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td><td>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td><td></td></tr>
<tr><td>〈신 설〉</td><td>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td><td>당해연도 연가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생 략)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1조(병가) ①---------- ---------- ----------연 60일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 ---------- 연 180일 ---------- ---------- ③ (현행과 같음)	질병 등에 의한 병가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시 병가일수를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3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정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을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 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을 때 4. 모범 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삭 제〉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삭 제〉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정
⑧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근거 마련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근거 마련으로 삭제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삭 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근거 마련으로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이유</th></tr>
<tr><td>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td><td></td><td></td></tr>
<tr><td>〈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7</td></tr><tr><td>자녀</td><td>1</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r><tr><td rowspan="2">회갑</td><td>본인 및 배우자</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1</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1</td></tr><tr><td rowspan="5">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7</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td><td>5</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3</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3</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3</td></tr><tr><td rowspan="3">탈상</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2</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td><td>1</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table>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td><td>〈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결혼</td><td>본인</td><td>7</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3</td></tr><tr><td rowspan="3">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2</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2</td></tr></table>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td><td>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부 칙 〈신 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